

세무평론

다지역 지분양도에 대한 특수 세무처리 신규

2013 년 12 월 12 일, 국가세무총국은 2013 년 제 72 호 공고를 반포하였으며 재세[2009]59 호문의 두 가지 경외 지분양도 거래에 관한 특수 세무처리¹에 적용된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국외' 양도(즉 59 호문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상황): 비주민기업이 그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주민기업에게 소유한 주민기업의 지분 양도.
- '국외-국내' 양도(즉 59 호문 제 7 조 제 2 항의 규정상황): 비주민기업이 그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민기업에게 소유한 다른 주민기업의 지분 양도.

제 72 호 공고는 반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하지만 공고가 시행하기 전에 아직 처리하지 않는 같은 유형의 거래는 특수 세무처리 규정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공고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고 요건

- **경외기업 분립(분할) 및 합병:** 72 호 공고는 59 호문의 제 7 조 제 1 항에서 경외기업 분립 및 합병으로 인하여 중국 주민기업의 지분양도를 발생시키는 상황이 포함됩니다.

¹ '특수성 세무처리'는 한국 세법상 적격 분할, 합병 등과 유사한 제도로서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세금을 다음 거래시까지 유예해 주는 일종의 과세이연 제도입니다.

- 경외 지분양도에 관한 등록 주관세무기관:** 경외 지분양도에 관련되어 특수 세무처리를 택한 경우 주관 세무기관에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59 호문 제 7 조 제 1 항 상황에 속한 경우(즉 '경외-경외' 양도), 피양도 기업 소재지의 소득세 주관 세무기관에서 등록하여야 합니다. 59 호문 제 7 조 제 2 항 상황에 속한 경우(즉 '국외-국내' 양도), 양도받는 기업 소재지의 소득세 주관 조세기관에서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특수 세무처리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상기 등록은 지분양도 계약서 혹은 협의서의 효력이 발생되어 공상변경등록 절차가 완성된 후 30 일 이내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 '국외-국외'양도는 거래시점에 미배당이익이 양도 후 분배하면 더 혜택하는 협정세율을 받지 못함:** '국외-국외' 양도(즉 59 호문 제 7 조 제 1 항 상황)에 대하여 특수 세무처리를 택한 경우 양도인 및 양수인은 다른 나라 혹은 지역의 세무주민이라면 피양도 기업의 지분을 양도하기 전의 미배당이익이 양도 후에 양도받는 기업에게 분배되려면, 양도받는 기업의 소재하는 나라 혹은 지역이 중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조세 안배를 포함)에서 주식 배당금 감세 최혜국 대우를 누리지 못합니다.
- 국세함[2009] 698 호 공문 제 9 조(즉, 성급 세무기관이 특수 세무 처리에 대한 심사비준을 한다는 규정)는 폐지되었으며 신공고는 여전히 세무기관이 세무처리에 대해 내부보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음:**

72 호 공고는 성급 세무기관이 특수 세무처리에 대해 심사 비준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했는데 주관 세무기관이 등록인의 지분양도 등록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특수 세무처리에 적용할지 여부는 성급 세무기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상기 절차는 보통 등록 신청을 수리한 후 30 근무일 이내 마무리해야 합니다. "국외-국내"양도하는 경우(즉, 59 호 공문 제 7 조 제 2 항의 경우), 양수인 소재지의 성급 세무기관이 주관 세무기관의 의견을 받은 30 일 이내 특수 세무처리에 적용하는 의견을 양도하는 기업 소재지의 성급 세무기관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동시에 성급 세무기관이 국가 세무총국에게 특수 세무 처리에 적용되는 비주민기업 지분양도의 사항을 올려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국가 세무총국은 72 호 공고의 발표를 통해서 특수 세무처리에 적용되는 비주민기업 지분양도와 관련된 사항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을 희망합니다. 세무기관의 내부 검토와 관리절차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72 호 공고의 발표는 비교적 적극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72 호 공고가 등록시 필요하는 자료 및 정보에 관한 방면에 정책지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분양도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세무기관의 특수 세무 처리 적용을 확인 받고 싶어하는 납세자에게 72 호 공고는 보다 제한성이 있습니다. 또한 세무기관으로부터 심사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 처하는 비주민기업 지분 양도의 경우, 72 호 공고는 특수 세무처리에 적용되는 요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새로운 규정을 제출했기 때문에 공고의 발표로 인하여 이부분에 기존 사례의 심사하는 시간이 연장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지역 지분양도를 계획하고 있는 납세자 및 다지역 지분양도를 이미 실시했지만 등록하지 않은 납세자는 관련된 등록 절차를 가급적 진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등록하지 못한다면 상기 지분양도에 대한 특수 세무처리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경우 아래 서비스팀과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Korean Service Group in Shanghai

徐祖明 파트너

Jeff, Xu

Tel: +86 21 6141 1278

Email: jexu@deloitte.com.cn

함지원 이사

Ham Jiwon

Tel: +86 21 6141 1468

Email: jiham@deloitte.com.cn

최근호 이사

Choi Gun Ho

Tel: +86 21 2316 6237

Email: guchoi@deloitte.com.cn